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남명 조식의 상소문, 언로(言路)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위원회뉴스

2015년도 제1차 예비법조인 ADR 연수 실시

201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5
03

Vol. 177



봄날

헬리콥터가 날아온다,
한 대, 두 대.

두 줄 가득 털 난 꿩음을
풀어놓는다.

시끄러운 부분만 가위로
동그랗게 오려낸다.

물 위에 띄운다.

청둥오리들이 부지런히 쫓아와
동그란 하늘의 털 난 꿈무늬
꼭꼭 쫓아댄다.

버들개지 눈이 찔끔
놀라서 바라보는
저쪽,

안 보이는 별들이 좌르륵 쏟아져 내리는 저쪽
물살에 은비늘이 된다.

강인한

- 1944년 전북 정읍 출생
-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 2010년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 시집 『불꽃』, 『전라도 시인』, 『우리나라 날씨』, 『칼레의 시민들』, 『황홀한 물살』, 『푸른 심연』, 『입술』, 『강변북로』, 시선집 『어린 신에게』, 시비평집 『시를 찾는 그대에게』가 있음



CONTENTS

- 04 역사 속 언론 남명 조식의 상소문, 언로(言路)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06 위원단상 담배와 술
- 07 음식이야기 정월대보름 음식 '약식(藥食)'
- 08 신 동의보감 꿀
- 09 상담노트 그 청년의 '억울'한 사연
- 10 직원마당 어설피름에 관하여
- 11 조정후기 우는 여자
- 12 위원회뉴스 · 위원동정
- 13 조정중재사례
- 14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3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

홈페이지 www.pac.or.kr 모바일웹 m.pac.or.kr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 01 언론피해 구제 상담
- 02 언론분쟁의 조정 · 중재
- 03 시정권고
- 04 선거기사 심의
- 05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주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명 조식의 상소문, 언로言路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필자 소개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졸업 (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학에 연구사
- 조선시대사학회 편집위원, 연구이사
- 남명학연구원 상임연구 위원
- 외교통상부 외규장각도서 자문보림위원
- KBS, EBS 역사프로그램 자문

주요 저서

- 『왕과 아들』
-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
- 『왕실의 혼례식 풍경』
- 『전통명품의 보고 규장각』
- 『조선평전』 외 다수

1. 정국을 요동치게 한 상소문

1555년(명종 10) 조정에 올라온 한 장의 상소문은 명종대의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상소문의 주인공은 남명 조식(曹植:1501~1572)으로,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되었던 인물이었다. 평생 관직을 사양하고 스스로 처사(處士)로 불리기를 원했던 선비학자 조식은 1555년 조정에서 제안한 단성현감을 사직하면서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한 상소문을 올렸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

상소문의 핵심 내용은 왕 명종(明宗:1534~1567)이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의 근본이 망했고 민심이 이반되었다는 것이었다. 첫 부분에서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잘못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이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큰 나무가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잔액이 이미 말라 버렸는데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가 어느 때에 닥쳐올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한 것에서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 잘못된 원인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垂簾聽政)에서 찾고 있다. “자전(慈殿: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깊은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외로운 후계자(孤嗣)이실 뿐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라고 한 데서 보듯이, 조식은 문정왕후를 부정적인 정치의 몸통으로 보았다. 사실 문정왕후는 1544년 11세의 어린 아들 명종이 즉위한 후 수렴청정을 하면서 윤원형 등 외척 세력을 대거 끌어들었다. 이에 따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치가 소수의 외척 세력에게 집중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되었다.

조식은 이런 현실에서 선비가 서야 할 길은 비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여겼다. 왕에게 불경한 표현이 될지언정 현실을 바로 지적해주는 것이 선비의 몫이라 판단하면서 직선적인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조식이 올린 상소문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고아로 표현한 대목은 명종에 의해서도 ‘군상불경죄(君上不敬罪)’로 논의될 만큼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정왕후에 대한 불만이 벽서(壁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식처럼 직선적인 언어로 비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군주에게 불경을 범했다’는 이유로 조식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신이나 사관들은 ‘조식이 초야에 묻힌 선비여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지 그 우국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거나, ‘조식에게 죄를 주면 언로가 막힌다.’는 논리로 조식을 적극 변호함으로써 파문은 가라앉을 수 있었다.

2. 조식은 누구인가?

조식은 무엇보다 학문에 있어서 수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敬)과 의(義)는 바로 남명 사상의 핵심이다. 남명은 ‘경’을 통한 수양을 바탕으로, 외부의 모순에 대해 과감하게 실천하는 개념인 ‘의’를 신념화하였다. 경의 상징으로 성성자(惺惺子:항상 깨어있음)라는 방울을, 의의 상징으로는 칼을 찾으며, 칼에는 ‘내명자경 외단자(內明者敬 外斷者義)’안으로 자신을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으로 과감히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라고 새겨 놓았다. 방울과 칼을 찬 선비 학자. 언뜻 연상되기 힘든 캐릭터이지만, 조식은 이러한 모습을 실천해 나갔다. 조정에 잘못이 있을 때마다 상소문을 통해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여 후학들에게는 강경한 대왜관(對倭觀)을 심어 주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정인홍, 객재우, 김면, 조종도 등 남명 문하에서 최다 의병장이 배출된 것도 남명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식이 스스로에 엄격했음은 ‘육천(浴川)’이라는 시에서도 나타난다. “그래도 티끌 먼지가 오장(五臟)에 남았거든 바로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보내리라”는 시구에서 보이듯, 유학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과격한 표현을 썼으며, 이는 그만큼 자신을 다잡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은 조식과 이황을 영남파의 양대 산맥으로 인정하면서, ‘이황의 학문이 바다처럼 넓다면 조식의 기질은 태산처럼 높다’고 함축적으로 대비시켰다. 조식의 의(義)는 상벌에 엄격한 무인의 기질에도 어울리며, 그가 차고 다녔던 ‘칼’의 이미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조식의 칼은 안으로는 자신에 대한 수양과 극기로, 밖으로는 외적에 대한 대처와 조정의 관료들에게 향해져 있었다. 칼로 상징되는 그의 이미지는 수양을 바탕으로 과감히 현실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해 가는 실천적인 선비 학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조식의 상소문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실천 행위의 하나로 표출되었다.

3. 보호받은 조식의 언론

조식의 상소문 파동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16세기 언론과 사관들의 언론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었다. 조식의 상소문에 대하여 당시 조정에 포진했던 대신들이나 언관들은 조식을 적극 변호하였고, 궁극에는 명종의 불편한 심기를 완화시켜 조식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사관(史官)들은 ‘조식이 선비로서 초야에 묻혀 있는데 벼슬과 녹봉을 보기를 뜯 구름 같이 하면서도 오히려 왕을 잊음이 없으니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언사(言辭)를 함에 강직하여 피함이 없으니 가히 이름을 헛되이 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조식의 언론이 결국에는 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명종에 의해 조식에 대한 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때도 ‘조식에게 죄를 준다면 언로가 막힘이 더욱 심해져서 왕의 덕에 누가 된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16세기 중종대 이후 조선 사회는 공도론(公道論)으로 무장한 사람파들이 사관이나 언관직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양사기(養士氣: 선비의 기상을 양성함), ‘납언론(納言論: 언론을 받아들임)’의 분위기가 조정에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조식의 과감한 상소문이 큰 문제없이 일단락된 것은 조정의 언론 중시 분위기가 한몫을 하였다. 당시 언관이었던 정종영과 같은 인물은 ‘참으로 말이 자전게 미쳤다면 죄를 다스려도 될 것이나, 조식은 지방의 선비로서 성품이 거칠고 예모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여 시골 선비가 상황을 잘 몰라 과격한 언론을 한 것이라면서 변호를 한 후에, ‘옛날의 제왕은 초야에 물러나 숨어 있는 선비와 갑옷을 입은 무사는 특이하게 대우했습니다.’라고 하여 조식과 같은 직선적인 언론을 제시하는 재야 선비를 우대해야 함을 은연중 강조하였다. 명종은 언로를 개방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불경함을 범한 것은 잘못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거듭 표시하였지만, 이번에는 성균관 유생들이 조식의 지원에 나섰다. 안사준 등 성균관 유생들 오백여 명이 상소문을 올려 ‘조식의 상소는 강직하고도 절실한 의론으로 정녕 나라를 걱정하는 성심에서 나온 것이며, 시무(時務)에 적응한 말이었다.’고 하면서 조식을 후원하였다. 이들은 ‘왕이 조식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언로가 막히고 사림(士林)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언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정의 대신들과 언관,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며 조식에 대한 처벌은 언론 탄압으로까지 비화되었으며, 결국 명종은 조식에게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게 되었다. 조식의 상소문 파문은 조선의 언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후기 현종대에는 우익정 김수항이 재야 선비 발언을 왕이 경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조식이 올린 ‘자전은 과부이고 명종은 외로운 후계자’라는 표현을 명종이 받아들인 것을 거론하였으며, 영조대 한원진의 상소에서도 ‘옛날 처사 조식의 상소 가운데 과격한 말이 많았으나 명종께서 초야의 오만한 말이라 하여 죄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조식이 1555년 단성현감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은 선비의 언론을 왕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말 한마디로 목숨을 날릴 수 있는 절대군주 앞에서 처사 조식은 당당하게 정치현실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재야 선비 조식의 명성을 굳건히 해 주었다. 최고 권력층의 문제점을 직선적으로 지적한 재야 선비의 기개와 그것이 허용될 수 있었던 언론문화는 지금의 현실에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담배와 술

박동섭
전 중재위원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도 있고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다. 그래서 습관은 좋은 나쁜든 그것이 한 번 몸에 배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 담배나 술 같은 기호품을 좋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담배 같이 끊기 쉬운 건 없더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끊었어.”라고 말하였더니, 줄담배를 피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문인 공초 오상순 선생도 유명한 애연가라 하루 담배 20갑을 피우고 게다가 공초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피우셨다고 한다. 그 바람에 아호도 공초(空超)라고 지으셨단다. 전 매청에서는 어느 해 공초 선생께 백양 담배를 몇 상자 증정하였다는 말도 들었다.

각설하고 내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니, 늦게 배운 셈이다. 그러나 담배를 그리 많이 피운 편은 아니었다. 담배 1갑을 1주일 동안 하루 2, 3개피씩 나누어서 피웠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담배라는 놈을 피워보니, 그 나름대로 맛과 맛도 있지만, 좀 복잡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담배를 피우려면 우선 라이터, 재떨이가 필요하며, 호주머니는 담배부스러기로 지저분하여 지고 몸에 담배냄새가 나고, 나아가 용돈도 야금야금 줄어들었다. (담배를 둘러싼 난센스 퀴즈: 담배는 있고 성냥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 담배는 없고, 성냥만 있는 사람은? 불만 있는 사람. 담배도 성냥도 없는 사람은? 입만 있는 사람). 그래서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연은 쉽지 않았고 애연가들이 “식후 불연(不煙)이면 3초 이내 즉사”라고 하면서 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1975년 새해를 기하여 나는 단호하게 담배를 끊었다. 그 후 간혹 꿈속에서나 담배를 한두 번 피워보기도 하였지만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금연의 계기는, J목사님이 주신 「술과 담배」라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다. 그 책은 술과 담배의 해독을 알리기 위하여 의학박사님들이 라디오로 전국에 방송한 내용을 편집한 책이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사람들이 연탄불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가스는 무서워하면서, 담배연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지 이상하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하여 4배나 높다(폐암 발생원인의 55.6%가 흡연이라는 발표도 나

옴)는 등이다.

내친 김에 나는 술도 몇 달 끊었다. 회식자리에서 “한약을 먹고 있는 중이라 술은 좀...”하고 사양하면, 동료는 “누구는 어디 한약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있나?”고 하면서 술을 강권한다. 특히 S 지원장님은 “박 판사는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는 곡기만 굶으면 되겠구먼!” 하시면서 못내 서운해 하시었다. 술과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는 밥숟가락만 놓으면 되겠다(곧 죽어라?)는 말이었다. 동료들은 한바탕 웃었지만, 언중유골이었다.

그 해 5월 경 장인 영감님(당시 K고등법원장)께 담배와 술을 끊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애주가이신 장인어른은 “왜 어디 몸이 아프냐?”고 물으시었다. 자초지종을 아뢰었더니, “아범아, 어지간하면 술은 재개하지 그래. 법관에게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워한단다. 손쉽게는 담배 1대 하시지요? 하고 말을 걸어오는데 ‘저는 담배 안 합니다’고 거절하고, ‘술 1잔 하시죠’하고 권하면 ‘술도 못합니다.’하고 또 거절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무안하겠니?” 하시면서 은근히 금주(禁酒)를 말리시었다. 내가 법관으로 임명될 당시 장인어른은 “제발 떨어진 술은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시었다. “떨어진 술은 무슨 술입니까?”하고 물었더니,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오늘월 긴긴 하루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칼칼하고 술 한 잔 생각나지. 그 때 친한 변호사나 사업가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같이 하실까요.’하면서 얻어먹는 술이 바로 떨어진 술이라고 하시었다. 나는 판사가 된 이후 퇴직할 때까지 그 말씀을 명심하고 「떨어진 술」은 일체 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지냈다. 동료들의 회식자리에서 나는 상습도주범(?)으로 낙인찍혔다. 여럿이서 술 마실 때는 슬그머니 도망가기도 쉬웠다. 장인 영감님은 퇴근하시면 집에서 저녁 반주를 즐겨 드시었다. 이를 본받아 나도 주말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포도주를 조금 마신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을 시집보내고 나니 이제 내가 장인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사위들이 모두 담배를 피울 줄 모르고, 술도 권커니 잣커니 하며 마실 정도는 못된다. 맥주 1캔이나 포도주 1잔이면 족하다. 가끔 사위들과 건배하면서 술잔을 부딪치려고 하면, 6살짜리 손자가 자기도 우유 잔을 들고 한뭇 끼겠다고 하니 그 모습이 그저 귀엽기만 하다.



정월대보름 음식 ‘약식藥食’

김영복
전통식생활문화연구원장
칼럼니스트

정월대보름 아침에는 부럼(땅콩, 호두, 잣)을 깨무는 ‘작절(嚼齧 : 부스럼 깨물기)’과 평안도 의주(義州) 지방 풍속으로 어린 남녀들이 이른 아침에 엿을 깨물어 이빨겨루기를 하는데, 이를 ‘치교(齒較)’라고 한다. 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 : 1776~1840)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밤 세 개를 깨무는 것을 부스럼과 열매를 씹는 것이라 하여 ‘교창과(咬瘡果)’라 한다.”고 간단히 적었다.

한편 이 날은 귀밝이술인 ‘이명주(耳明酒)’를 마시는데, 이 술을 명이주(明耳酒) · 이롱주(耳聾酒) · 청이주(聽耳酒) · 총이주(聰耳酒) · 치롱주(治聾酒)라고도 한다. 대보름 저녁에는 오곡잡반(五穀雜飯)에 푸성귀나 김으로 복을 싸서 먹는 복과(福裹)를 만들어서 복쌈(복섬 : 縛苦)과 약식(藥食)을 먹고, 달이 뜰 무렵 달맞이를 즐긴다. 대보름날 한국은 약식을 먹지만, 중국은 ‘원소절(元宵節)’이라 하여 찹쌀가루를 피(皮)로 해서 안에는 설탕 소를 넣어 원형으로 빚은 ‘단원(탄위안, 團圓)’이라는 원소(元宵)를 화목과 단란함의 상징으로 먹는다. 즉 중국 사람들의 대보름음식은 약식이 아니라 탄위안이라 불리는 원소병(元宵餅)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당나라 위거원(韋巨源)이 쓴 『식보(食譜)』의 ‘유화명주(油畫明珠)’라 하는 유반(油飯)이 약반(藥飯)과 비슷하다 하여 약식이 신라 고유의 창작 식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반과 약반은 조리학 상으로도 전혀 다른 음식이다.

유반이라고 하는 ‘만앵하미고(鰻櫻蝦米糕)’는 “관자와 버섯, 야채, 섞어 볶아낸 후 소의 힘줄과 도가니 버섯, 장어, 벵새우를 올린” 볶음밥 형태의 음식이며, 대만의 태자반(太子飯)으로 불리는 ‘유반(요반, 油飯)’은 버섯과 고기 졸인 것, 오징어 토막과 벵새우 같은 해산물, 밤 등을 섞은 뒤 간장과 소스로 요리한 음식으로, 유화명주는 약식이라기보다 ‘볶음밥’이다.

1611년 허균(許筠)이 쓴 『도문대작(屠門大箚)』에 “우리의 약밥을 중국 사람들이 매우 즐기고, 이것을 나름대로 모방하여 만들어 ‘고려밥(高麗飯)’이라 하면서 먹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약식이 중국까지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찹쌀을 잠깐 찌서 밥을 만들어 참기름과 꿀 · 간장으로 주무르고, 대추와 밤은 살만 취해 잘게 써는데, 그것을 넣은 비율은 쌀의 양을 보아가며 정한다. 이것을 다시 푹 찐 다음 조상에게 올리고 손님에게 대접하며 이웃끼리 서로 보내기도 하는데, 그것을 약밥이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풍속에 꿀을 약이라 하므로, 밀반(密飯)을 약밥이라 하고, 밀과(密果)를 약과라고 한다.”고 하였다.

약밥의 맛에 대해서는 “역관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갔을 때, 정월 대보름에 옹인(甕人, 熟手)더러 이를 만들도록 했는데, 연경 안의 귀인들이 그 맛을 보고 반색하며, 그 여러 가지 맛을 보고 매우 좋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전해 주었으나 끝내 만들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의하면 보름날 약밥은 찹쌀 · 찰수수 · 흰팥 각 2되, 차조 1되, 좋은 물콩 5홉, 대추 1되의 비율로 섞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약밥을 짓지만 중국에서는 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약밥에 사병(柿餅, 감편)을,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꿀 대신 설탕, 밤 대신 꽃감이나 고구마를 이용해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다.



꿀

김태균
한의사

약(藥)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과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최고의 약들이 있지만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연에서 약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류가 오랫동안 믿고 신뢰해왔던 약 중 으뜸이 ‘꿀’이라 할 수 있다.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은 꿀에 대하여 말을 하기를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고, 비위를 좋게 하며 통증을 치료하고 해독을 한다.’고 소개를 했었다. 꿀 속에는 면역을 상승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많은 영양이 들어가 있어서 마르고 허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소화기가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지며, 빈혈이 치료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흔히 예로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꿀물을 마시곤 하는데 이는 꿀 속에는 감기 치료의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다. 꿀은 꽃이 피는 벌판과 벌들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연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천연의 약품이자 음식이다. 만일 우리가 재난을 위하여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약품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꿀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꿀은 상처나 각종 피부병 부위에 발라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감염이 됐을 때 좋은 항생제의 역할을 하며, 독감에 걸렸거나 여러 유행병이 있을 때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에서 삼천 년이 넘는 꿀통을 발견했는데, 전혀 썩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 어떤 음식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썩지 않을 수가 있을까. 꿀은 어떤 방부제보다 강하고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려 쿵쿵쿵거리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꿀단지를 꺼내어 꿀물을 타주시곤 하셨다. 꿀물을 마시고 한숨자고 나면 체력이 회복되고 감기도 물러갔었다. 우리가 청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꿀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억제하는 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감기가 걸렸을 때 꿀물을 마시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흔히 기관지를 좋아지게 하려고 도라지, 인삼, 배와 같은 식품과 함께 꿀을 담가 먹곤 하는데 단순히 단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꿀은 다양한 기관지 증상을 호전시키는 좋은 약재이기 때문이다.

꿀은 예로부터 상처에 효과가 있다며 환처에 발라주곤 했는데, 천연 꿀은 다양한 병원균들을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술이 헐거나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거나 가려움증이 있거나 여러 종류의 피부병에 꿀은 연고처럼 애용돼왔다. 또 파라인의 재료로 쓰이는 벌집도 연고의 재료로 자주 활용되는데, 벌집과 올리브기름과 몇 가지 한약재를 한꺼번에 끓여서 걸러내고 굳히주면 훌륭한 천연 연고가 된다. 한방에서는 자운고(紫雲膏) 연고를 만들 때 반드시 함께 넣어주는 훌륭한 약재이다.

천연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병을 예방하며, 생리통을 경감시키고 관절염,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항암작용을 하며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설탕이 섞여 있는 꿀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를 필요가 있다. 천연꿀 속에는 꿀벌들이 문혀둔 꽃가루 성분들이 있는데, 꽃가루는 자연강장제의 효능이 있으며, 근육을 강화시키고 각종 피부염을 치료하며 남성들의 전립선질환과 여성의 생리불순에 좋은 효과가 있다. 또한 다양한 비타

민과 무기질이 듬뿍 함유되어 있어 최고의 영양제로서 손색이 없다.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를 하고 코를 풀고 있는 가족들에게 마냥 감기약만 먹여선 안 된다. 우리는 너무 현대 과학을 맹신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감기약을 과자 먹듯 먹곤 한다.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병원을 너무 자주 드나드는 것도 문제이다.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감기약을 자주 먹이는 것은 면역저하와 체력허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소 자연이 주는 천연의 영양제이자 치료약인 천연의 꿀을 드셔보실 것을 꼭 권해 드린다.



그 청년의 '억울'한 사연

구울화
접수상담팀장
변호사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해 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계속해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미용업계의 신문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성폭행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의 전과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여성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팀을 찾은 A씨는 매우 열띤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보도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문제의 여성 수강생과 A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했으며 결코 성폭행 한 사실도 없었던, A씨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의 부모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재판과정에서 A씨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의 요지였다.

분명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A씨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 역시 진실하지 못한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로 이를 바로잡고 싶다는 것이다.

법이 허용한 상소, 재심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든 판결을 번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이 보장한 제도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정치, 사회적 단체 또는 언론도 법관의 재판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이 판결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법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실인정이나 유·무죄, 또는 승·패소의 판단 그 자체를 대상으로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보도에 의해 재판결과가 바뀌게 되고 결국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도 판결문의 내용에 정면으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2항은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5호로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어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A씨가 수강생을 성폭행 한 전과가 있다는 보도는 법원의 판결, 그 중에서도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A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를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5호에 저촉되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동안 A씨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정말로 그가 성폭행 한 사실이 없고 수강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라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또한 상담 신청인의 말을 최대한 믿고 그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상담팀 직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억울함은 언론중재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억울함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미진함에 가득찬 채 낙심하여 어깨를 늘어뜨리고 상담실을 나서던 A씨의 뒷모습이 마음에 남는다.

어설피품에 관하여

손보원
기획팀

2014년 10월 17일 저녁. 나는 한 청년이 사무실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장면을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드라마 <미생> 첫 화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는 안영이의 '엥뽕' 판매 장면도 아니었고 장그래가 바둑으로 바이어를 홀리는 장면도 아니었다. 내가 혼을 빼놓고 미생을 챙겨보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어설피폰 정장을 입고 사무실 주변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장그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삼 일 후 10월 20일 아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푸른색 윈도우 배경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드라마 속 장그래처럼 말이다. 신드롬이니 게 약식의 설움을 담았다느니 하는 <미생>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의미가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 드라마는 현실 그 자체였기에 무척이나 의미 있게 다가왔다. 물론 10월 20일의 신입사원은 10월 17일의 장그래보다 더욱 어설피었다.

막장, 판타지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종종 건져 올리고는 보물 같은 드라마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서툰 인간 군상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드라마 <미생>이 인기 가도를 달리기 시작할 즈음하여 종영된 드라마 <유나의 거리>에도 어설피폰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남 앞에서는 한껏 허세를 부리지만 집주인인 옛 후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물간 건달이라든가, 남자를 홀려서 사는 것보다는 '깍지'를 터는 것이 더 착한 일이라는 소매치기, 누나에게 얹혀사는 백수 동생, 은퇴한 형사가 바로 그 인물들이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은 자주 등장한다. 영화 <중경삼림(重慶森林)>의 금성무와 양조위라든가, 홍상수 영화 속 남자주인공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마이너 한 코드에서 어설피폰은 '찌질함'이라는 용어로 치환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찌질함'을 선봉에 세운 <찌질의 역사>라는 웹툰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드라마, 영화, 웹툰 속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껏 '찌질함'을 선보인다.

이렇게 인물들의 서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얻어내는 가장 큰 효과는 드라마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한 번쯤 했던 어리숙한 행동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들은 이 공감을 통해 다른 드라마보다 한 차원 높은 현실성을 얻는다. 물론 모든 드라마는 어느 정

도의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다큐멘터리와 다름없어지기 때문이다. <미생>이나 <유나의 거리>를 비롯한 작품들도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라 평가절하할 수 있다. 또 현실적인 것을 보려면 <인간극장>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편이 한결 더 낫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장, 판타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중간 어디쯤 놓여있는 이들 드라마를 즐겨보는 이유는 이들 작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위로 같은 것을 주곤 하기 때문이다. 막장, 판타지 드라마는 권선징악을 필두로 한 이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들 드라마를 볼 때 공감을 하거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 장보리와 같은 천사나 연민정 같은 악녀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기에 마치 딴 세상 이야기를 하듯만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다큐멘터리는 이상을 완벽히 배제한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너무나 현실적 이어서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하다. 그 때문에 나는 다큐멘터리에서 어떠한 삶의 위로를 받기 어려웠다. 다큐멘터리 속 인물들의 슬픔에 대해 공감은 할 수 있었으되, 그들이 겪는 잔혹한 현실에는 눈을 돌려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 서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들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현실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면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생>이 새로운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장그래와 오차장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미생>이 판타지였다면 둘은 원 인터내셔널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미생>이 다큐멘터리였다면 둘은 퇴사 후 비정규직을 전전했을 것이다. 이처럼 미생류의 '사실적 드라마'들은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게 나아간다.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부터 위로받는다. 나 같이 어설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그리고 현실에도 어떤 기준이나 희망이 있음에.

10월 17일의 신입사원 장그래는 드라마가 끝나는 12월 20일 유능한 영업사원으로 성장한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희망을 품어본다. 훗날 10월 20일의 내가 어설피폰을 벗어버린 때 마치 저 '사실적 드라마'들처럼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게 나아가고 있기를.

우는 여자

김성찬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저 흐느끼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디서 들도 보도 못한 대성통곡이었다. 처음엔 까다로운 민원인인 줄만 알았다. 그들은 종종 과잉된 감정을 무기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통명스레 전화를 받은 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한참을 숨이 끊어지도록 울어 심각한 사태임을 직감했다. 우는 그녀를 달래보려 여러 차례 말을 걸어보았지만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만 어렵사리 내뱉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지금 그녀에게 전화한 목적을 구하기보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울음이 그치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게 최선임을 말이다.

사정은 이렇다. 모 기관에서 1년 새 성희롱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언론은 그 기관의 노조가 사측을 흔들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노조는 성폭력 사건은 노사 갈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언론조정신청을 했고 한 매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데에 합의했다. 다른 매체들은 조정심리가 예정돼 있었다. 그녀의 전화는 신청인이 첫 번째 매체와 합의한 후에 걸려왔다. 어떻게 당사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사건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면 재차 그 사건이 거론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굳이 절차를 따지자면 그녀는 이번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 결과에 알기할 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녀가 겪은 고통이 이번 조정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문점은 있었다. 그녀도 해당 노조의 노조원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조정대상기사를 상대로 조정신청하는 것을 몰랐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애초엔 합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러나 싶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었다. 노조는 그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다. 이후 모든 상황을 인지한 그녀는 위원회뿐 아니라 해당 노조 집행부 측에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노조는 뒤늦게 모든 사건을 취하였다.

노조 집행부가 왜 그녀와 상의도 없이 조정신청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노조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곧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도 구제되는 것이라고 여겼을 공산이 크다. 외려 그녀의 항의에 노조 집행부는 당황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남성적인 시각에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자칫 무감각하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는 노조의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위원회 뉴스

NEWS

2015년도 제1차 예비법조인 ADR 연수 실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생 32명을 대상으로 예비법조인 ADR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으로 부터 '미디어의 자유의 본질'에 관한 특강을 들었으며, 언론법제 및 조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과 묵시적 동의 여부 판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초상권의 개념 및 인정 범위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위법성조각사유 중 상당성 인정 범위 고찰'을 주제로 모의조정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와 모의조정에는 조재연(서울제1중재부), 한석동(서울제3중재부) 위원과 오재성 부장, 지성우 위원(각 서울제7중재부)이 참석해 종합강평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예비법조인 ADR과정에 참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모의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 상반기 재 ·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될 '2015년도 상반기 재 · 보궐선거' 관련 선거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2015년도 상반기 재 ·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봄호(통권 14호)가 3월 1일 발간됐다. 이번 호에는 조정에서 전략적 개입으로서 질문을 비롯하여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기법, 조선시대 역관을 통해 살펴본 역사 속 협상과 설득의 지혜 등 설득 및 수사기법에 관한 다양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는 올해부터 격월간에서 계간으로 변경, 연 4회 발행한다.

위원동정

COMMISSIONERS

법원 인사 등으로 일부 중재부장 사퇴

대법원의 2월 법관 인사 등으로 인해 일부 중재부장이 중재위원직을 사퇴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제1중재부 최승록 중재부장 퇴직 / 서울제2중재부 장진훈 중재부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서울제4중재부 임병렬 중재부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부산중재부 김상국 중재부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 대구가정법원장 / 대구중재부 정용달 중재부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 경기중재부 고연금 중재부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제주중재부 최남식 중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강행욱 위원(광주중재부, 변호사)은 2월 3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린 2015년도 광주YMCA 정기총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출됐다. 이사 임기는 3년이다.



정교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2월 13일 세종시청 별관에서 열린 세종시감사위원회 출범식에서 초대 감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 임기는 3년이다.

CASES

명예훼손 사례

외신 인용한 의료분쟁 기사, 분쟁여부 고지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A통신사는 외신을 인용하여 영국 유명 안과에서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 6명 가운데 4명에게서 시력저하가 나타났고 호주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난 한 여성은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렌즈를 국내에 독점수입하는 신청인 업체는, 외신 기사는 현지에서 제조사 및 병원 측과 법률적 분쟁 중이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여성과 관련한 소송은 렌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언급된 렌즈 수술환자 6명은 수술 환자 전체 수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정심리 결과, 인용한 외신기사는 법률적 분쟁 중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보도에 언급된 여성이 보상금을 받은 소송은 렌즈가 아닌 시력교정술에 관한 것이며 유명 안과병원이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기사의 도표 및 로고 사용에도 독자의 시선을 고려한 중재부

B신문사는 방송외주제작사의 실태 및 고충을 보도하면서 지상파방송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유형을 도표화하여 보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의 각 로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상파방송사로서 도표에 나열된 문제 유형 중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국내 지상파방송사는 소수로 특정되어 있고 도표에 각 방송사의 로고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특정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청인도 해당 문제 유형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바, 기사 내 도표 게재 시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의 주의를 요청했고,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반론보도 하는 데 합의했다.

아기 사진을 부정적으로 편집 게재한 잡지사, 베스트컷으로 재게재

육아전문지인 C잡지사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을 경우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한 아기의 사진을 수정, 얼굴이 부은 것처럼 둥글게 편집하여 게재했다. 이에 대해 아기 아빠인 신청인은 사전에 기사의 취지를 알았고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도 동의했으나, 과도한 편집으로 아기 사진이 부정적으로 게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중재부는 C잡지사가 사전에 아기 엄마에게 아기 사진을 편집하여 게재할 것임을 충분히 설명한 사정 등을 고려해 아기 아빠가 선정한 아기의 베스트컷을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 해당 사건은 취하됐다.

초상권침해 사례

동명이인의 사진을 게재, 손해배상 결정

D신문은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을 구하고 사망한 교사 최 모 씨가 미 재단으로부터 추모메달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된 보도라 파급력이 컸고, 이에 대한 신문사의 후속 대처도 미흡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고인으로 보도된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피신청인 측에서 사과문을 포함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고, 과실에 의한 보도였으므로 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금동희

1월에 인사발령으로 부서배치를 새로 받아 서무 및 도서관리 업무를 맡아보다 보니 이전 업무 때 접할 수 없었던 여러 간행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언론  사람」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기고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지형적 특성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척 신선하고 색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적 봉건제도에 가까운 다이묘영주제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식의 역사발전을 실천할 수 있었던 유일민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는 저자의 심증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한 일본의 지형적 특수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인의 ‘훈네’와 ‘다테마에’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약간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더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언론  사람」의 애독자가 될 거 같네요.

김명선

연휴 막바지에 우연히 접한 「언론  사람」을 읽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국악계의 외인구단’ 등의 글들을 보면서 균형 잡히고 알찬 내용 구성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에서 최근에 한일 갈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한일 간 여러 가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악계의 외인구단’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이 국악의 매력에 빠져드는 현상이 다만 국악이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취미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비개비란 단어가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일반인이 취미에 빠져드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예훼손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로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아서 저 같은 일반인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론  사람」을 처음 접했을 때 명예훼손 사례와 같이 업무 중심의 잡지라고 생각했는데 업무 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숙

법률 용어도 이따금 나온 언론 중재 이야기도 좋았지만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필 형식인 일상생활에서의 애환을 그린 수필 형식인 지연옥 중재위원의 위원단상 ‘쿠크리칼과 냉이’는 새봄을 샘내듯이 맑고 산뜻한 풀내음이 묻어 나온 글 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냉이와 달래가 나오는 발단부터 예사롭지 않더니만 그 인연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은 짧지만 반전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봉정만리나 되는 히말라야 산중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친구 부탁으로 어렵게 구입한 쿠크리칼 두 자루가 인천공항에서 무기로 오인 받은 사연 등으로 탈선이 될 줄이야! 「언론  사람」을 읽고 이래저래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조정중재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언론중재 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산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 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_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_ 물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_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_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Eye-Net <http://people.pac.or.kr>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 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 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선거일 : 2015년 4월 2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2월 28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자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 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 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가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